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4. 12 선고 2022가단859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2. 15.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사이에 2021. 9. 13. 체결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1. 9. 13. 접수 제796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20. 7. 8. 3,000만원에 매도하였다가 다시 2021. 9. 13. 2,5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의 직원인 사실, B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 을1 내지 3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B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1)로 주장을 하나, 피고와 B의 관계, 다시 재매수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별지 청구원인 4의 다항 기재와 같이 악의는 추정되고(주식회사 C로 송금한 돈이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와 피고 사이에 2021. 9. 13. 체결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1. 9. 13. 접수 제796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조정현

별지

1) 피고는 2021. 9. 6. 매수대금 2,500만 원 및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31,470,060원을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로 송금하고 정당하게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